##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우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4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김우영·송재봉·김성환

김문수 · 김남희 · 임미애

정동영 · 염태영 · 양문석

차지호 · 김 윤 · 김남근

윤종군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으로 현행법령은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·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(법 제2조).

그런데 주거권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실직 등의 경제적 위험이 닥쳐올 때 주거의 안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,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 했지만,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, 사회 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(법 제11조제3항).

이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·물리적·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또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#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물리적·사회적 위험으로부터"를 "경제적·물리적·사회적 위험으로부터"로, "권리를 갖는다"를 "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주거권) 국민은 관계 법령       | 제2조(주거권)            |
|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물</u> | <u>경</u>            |
| <u>리적·사회적 위험으로부터</u> 벗   | 제적・물리적・사회적 위험으로     |
| 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         | <u>부터</u>           |
| 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권리를 갖는다.                 | <u>권리를 가지며 국가</u>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여야 한다</u> .      |
| 제11조(임대주택의 공급 등) ①・      | 제11조(임대주택의 공급 등) ①・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         | ③                   |
| 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<u>지</u>  | <u>지</u>            |
| 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| 원하여야 한다.            |
| 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